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개선방향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Deliberation of the Seoul Public Design Promotion Committee

주 저 자 : 최성호 (Choi, Sung Ho) 한양사이버대학교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교수
snuspace@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s.2025.4.532>

접수일 2025. 12. 09. / 심사완료일 2025. 12. 11. / 게재확정일 2025. 12. 15. / 게재일 2025. 12. 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osition and deliberation system of the Seoul Public Design Promotion Committee and explore the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to suggest the direction that deliberation should go and to provide a basis for related research. The study mainly explored the deliberation system and analyzed that deliberation under the Public Design Act and social infrastructure deliberation under the Landscape Act are integrated. Then, by extra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beration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liberation list for one year in 2025,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eliberation system was proposed and four suggestions were derived.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the delibera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Public Design Promotion Committee should prepar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providing direction for the operation of public design deliberation and guideline research in the future.

Keyword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Committee(위원회), Deliberation(심의)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탐구해 봄으로써, 공공디자인 심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크게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심의체계를 탐구하여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공공디자인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심의가 통합된 형태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의의 특징 추출 및 2025년 1년간 심의 목록의 특성을 분석하여 심의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네 가지의 제안사항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의 마련과 심의 도서 구성 체계 및 제출 자료의 공시, 사전검토 이행 필수화 및 준공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심의체계의 구조적 개선, 심의 안건 준비 안내 홈페이지 운용, 심의위원에 대한 세부기준 정기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과 지침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심의체계

- 2-1. 공공디자인법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2-2.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와 위원회 운영
- 2-3.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체계

3.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주안점 및 발전 방향

- 3-1.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주요 대상
- 3-2.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주요 논점
- 3-3.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발전 방향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디자인법 제9조(지역위원회)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일 기준, 전국 광역 17개 및 기초 226개,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95.1%)하고 국가법에 따른 위임을 받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이전의 서울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각종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공공디자인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심의는 사업의 전반적인 품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시의 디자인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정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연간 140~160여건 내외의 심의를 수행함으로써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법이 2014년 경관심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건축법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2015년에 이미 제정한 것과 달리, 공공디자인법은 ‘심의기준 및 운영’에 대해 국가법 차원에서의 행정규칙 마련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이고, 서울시 역시 심의기준의 공개 및 객관화가 부족한 편이다.

경관법은 2007년 제정된 후 2014년 12월 기준 경관조례가 111개 지자체에 불과했고, 동 시기 공공디자인법은 제정되기도 전이었지만 공공디자인 및 도시디자인 관련 조례가 이미 134개 지자체를 넘어서 상태였다. 따라서 단순히 비교하여 경관법이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심의 운영 지침을 마련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 행정은 매우 더딘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디자인을 가장 선도하

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심의 관련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심의기준과 운영에 있어 보다 나은 향상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심의 체계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탐구해봄으로써 공공디자인 심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에 명시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위원회, 즉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법에서 지역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 지침을 확립하지 않고 있어, 공공디자인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의 심의체계를 중심으로 심의의 체계와 특성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운영, 심의 의결, 심의 프로세스, 심의 대상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한다.

구체적 연구를 위한 연구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디자인법에서 명시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공공디자인법에서 위임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와 위원회 운영 구성의 기본 개요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작동하는 형태로, 경관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형식적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심의의 의결과 프로세스 체계를 살펴, 심의체계를 도식으로 정리한다.

셋째,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로써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 대한 특성분석을 수행하고, 2025년 1개년 공공디자인 심의의 주요 논점을 분석해, 실질적 작동 기능을 분석한다.

넷째, 이러한 서울시 심의의 특성 중 부족요인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 특성과 운영체계의 전반적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과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가 및 연구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심의체계

2-1. 공공디자인법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디자인법이 2016년 2월에 제정되고 그 해 8월부터 시행되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디자인법은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의 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지역위원회의 법 조문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조정범위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공공디자인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공공디자인위원회(국가)	지역위원회(지사체)
종합계획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협의체의 자문	추진협의체의 자문
진흥 및 통합관리 정책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진흥 사업 및 활동 지원	
법률 제도의 개선	
위원회의 필요 인정 사항	

그간 공공디자인법제 하에서 2018년 1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고시되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몇 가지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다.¹⁾ 그러나 공공디자인 진흥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위원회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법 제정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구성되는 지역위원회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운영을 위한 기준'은 전혀 제시되지 않아, 행정의 일선에서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가로, 공원, 광장, 하천 및 건축물 부속시설 등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의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속성의 각종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또한 표준조례 구성 안에서 제공하여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작동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나 범죄예방디자인도 모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심의는 이들 사

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들 다양한 영역들은 공공공간의 경우 도면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사전 법정 검토사항, 사전계획이 중요하고, 공공시설물은 제품 형태로 세부적인 제작과 조립성, 현장설치의 용이성 검토 등이 필수적이다. 또 공공시각매체의 경우 브랜드, 서체, 레이아웃 등 이미지 중심체계로 도면보다는 적절한 비교안 제시가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심의를 위한 제출 자료의 기본 요소와 양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이 요구되지만 국가법인 공공디자인법의 기준은 아직까지 요원하다.

일례로 경관법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3가지 다른 경관접근 유형에 따라, 경관심의 도서 작성방법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²⁾ 또한 각 경관심의 도서가 갖추어야 할 구성형식과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자료로 제시하여야 할지까지도 표 2처럼 세심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특성에 따라 세밀한 구성을 행정규칙을 고시하여 요구함으로써, 전국적인 경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처럼 공공디자인법도 심의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2] 경관법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도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방법
표지	○ 사업명, 재시 여부,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목차	○ 심의도서 내용의 순서를 기재한다.
I.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 주요 사업추진사항과 추진계획, 타 위원회 심의여부 및 결과 등 개략적인 사업 추진경위를 기술한다.
II. 현황 조사 및 분석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margin-bottom: 10px;"> <p>경관 관련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관련 계획을 조사·분석한다. -경관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관설계지침 또는 디자인가이드라인 -그 외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시 구축된 각종자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계획 ○ (분석방법) 문헌조사 등을 통해 관련 계획 중에서 대상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술한다. </div> <div> <p>경관 자원 및 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항목 및 범위)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 등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 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분석방법)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을 </div> </div>

1) 공공디자인법 행정규칙 연혁,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law.go.kr/법령/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

2)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표2],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law.go.kr/행정규칙/경관심의운영지침

	<p>특성</p> <p>통해 조사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현황분석도를 작성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며 그 출처를 표기한다. -현황분석종합도에는 2차원 지형도 및 항공사진 위에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과 공간적 범위를 표기하며 주요한 장소에서는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한다.</p>
<p>III. 기본 방향</p>	<p>○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p>
<p>IV. 기본 구상</p>	<p>○ (기재사항) 사회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 방향, 경관상 주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기재방법) 경관 기본구상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개략적인 도면 또는 스케치를 첨부한다. -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는 평면도, 횡단면도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 -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 변화되는 경관을 예측하기 위해 지형도와 항공사진에 선형을 표기하여 현황과 비교한다. - 필요한 경우 사업지역의 주변 현황 및 이동속도 등 특성에 따라 영역을 나누어 평면도에 각 영역별 설계 방향을 설정한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사례사진 등 예시를 첨부한다. -경사지 또는 중요한 경관자원과 인접한 공간,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 등 경관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대한 간략한 단면도와 스케치를 작성한다. -이동속도에 따른 시설 이용자가 바라보는 연속 경관 이미지, 해당 시설이 통과하는 주변지역에서 해당 시설을 바라보았을 때의 조망 등을 제시한다. -도면의 축적은 전체적인 선형 및 구조,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주요한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p>
<p>V. 주요 시설의 설계 방향</p>	<p>○ (기재사항) 도로, 철도, 하천 등 각각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시설에 대한 규모, 배치, 형태 등의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경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설, 공작물 및 장소를 선정한다. *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도로의 조성으로 인해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나 시설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장소'는 도시진입부 등, '주요 시설'은 교량, 터널, 교차로, 휴게시설, 방음시설 등이 될 수 있음 -이용 특성 및 주요 공간 특성을 고려한 주요 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제시 등을 제시한다. ○ (기재방법) 주요 시설에 대한 설계방향을 기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표현한 관련 도면 및 이미지를 첨부한다. -배치도, 스케치, 이미지 등을 첨부하여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표현한다.</p>

	<p>-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장단점 비교표 또는 도면을 작성하여 설명한다. -도면의 축적은 각 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형태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아간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주변의 전체적인 아간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를 작성한다.</p>
<p>그 밖의 사항</p>	<p>○ 사전 검토 또는 경관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사항(경관사전 검토를 거쳤거나 재심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p>

2-2.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와 위원회 운영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조례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항에서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의 법제 구성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조례의 법제 구성

장	조	항목
제3장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제15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회의록 등의 비치
	제17조	의견청취 등
제18조	수당	
제19조	운영세칙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심의의 유형과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심의의 실제적인 범위를 표4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심의의 유형은 크게 정책과 제도, 사업 추진 및 지원,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물 및 사업, 경관조례의 사회기반시설, 기타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특징적인 점은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나 공공디자인 사업 외에 서울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를 위임받아 함께 심의

한다는 점이다. 또한 경관법에 따른 서울시 경관조례의 경관위원회 중 사회기반시설은 전부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국장급이 맡는 것과 달리, 디자인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의사결정권을 민간에 위임함으로써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표 4]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범위(자문포함)

심의 유형	심의 해당 사항
정책 및 제도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및 지원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사업제안에 따른 위원회의 사업비 지원 심의)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물 및 사업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사항
경관조례의 사회기반시설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관시설은 제외)
	기타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구성은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위원의 자격은 다음 표5와 같다. 아울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표 5]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자격

구분	자격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대학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연구기관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한 사람
실무경력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당연직	디자인정책관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거친다.

2-3.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체계

송영민(2024)은 ‘공공디자인이 지역의 정체성을 유형화하는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은 주관성이 개입되는 디자인의 특수성에 대한 중립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심의 운영지침에는 정책과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원칙적인 디자인 논리와 정성적 판단의 기준도 함께 제시함이 바람직하다. 법에서 정한 사항 및 종합계획과 함께 심의지침은 지역위원회 심의 시 실제 디자인이 구현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시 운영지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심의 기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³⁾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인 서울시 공공디

3) 송영민, 공공디자인 정책의 정합성 이해-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9, No.8, 2024, p.726

자인 심의 역시 실제 디자인이 구현되는 심의 기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 체계 측면에서 여러 기준들을 확립하고 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심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에 따라 서울시만의 특수한 상황이 강하게 반영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심의대상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성이 발견된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는 표 6과 같이, 기본설계 완료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으로 인한 디자인 변경도 자주 있으며,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다. 심의의 주기는 연 20회 이내로 월별 2회를 기본 원칙으로 진행하며,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의 제출자료는 기본적으로 심의신청서와 심의도서의 2가지이며, 가로공간과 공공건축물 부속시설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추가로 부가하고 있다. 심의제출자료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경관법에서 정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어,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만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시각매체 등에 대해서는 심의신청자가 임의의 방식으로 제출 자료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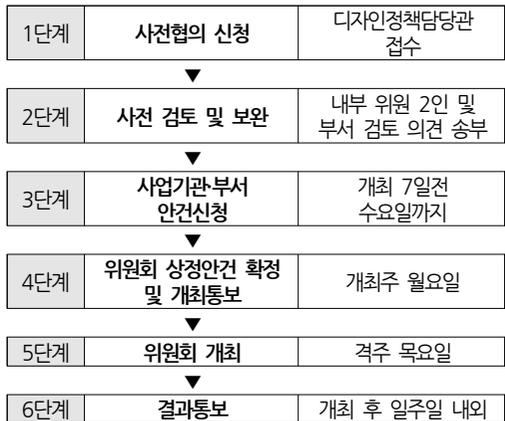
[표 6]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개요

항목	내용
심의시기	기본설계 완료 전
심의주기	매월 2, 4주 목요일 / 연 20회 이내
심의상정	매 위원회별 10건 상정
신청방법	서울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이용, 심의개최 2주전까지 사전협의 요청
	회의개최 7일전 수요일까지 심의신청서 첨부 공문 신청
심의 제출자료	심의신청서, 심의도서(PDF),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등

다음 표 7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운영 프로세스의 기본 진행 단계를 보여준다. 최초 심의 협의로부터 결과통보까지 6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친다. 사전협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위원 2인으로 하여금 접수 예정인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 수정하여 심의 접수토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전협의의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이의 준수가 심의 운영 기준으로 명확히 행정규칙화 되어 있지

않아 미준수되고 수정 없이 무조건 심의접수를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사전협의 단계로부터 접수(안건신청)와 개최통보 등을 거쳐 결과가 통보되기까지는 약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재심으로 의결된 경우, 결과 통보 후 다시 안건신청을 해야 하므로 다시 3주가 소요된다.

[표 7]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운영 프로세스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신청 자료는 다음 표 8과 같다. 구성항목은 크게 행정검토와 대상지 분석, 디자인 검토(안), 추진계획의 4가지 정도이지만, 경관법의 행정규칙인 경관 심의 운영 지침처럼 각각의 세부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 운영지침은 제공되지 않는다. 구성항목의 행정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성은 없어, 심의 과정에서 앞의 행정사항들을 먼저 질의하고 디자인안을 검토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표 8]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신청 자료의 구성

구성 항목	심의 자료 내용
행정검토	사업부서, 사업개요, 사업비 규모, 심의상정 사유(특별교부금 사유 등) 설계사명, 과업계약방식
대상지 분석	위치도(계획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대상지 주변 현황 조사내용 및 사진 - 파노라마 사진촬영 권장
디자인 검토(안)	디자인 컨셉 (계획 의도, 기본방향)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단면 계획 디자인(안) 사물레이션
추진 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 기타 필요 자료

* 제출파일 : pdf

심의의 운영은 아래 표 9와 같이, 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독립적인 로그인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으며, 회차별 심의의 서면 사전의견, 위원회 개최시 입력 가능한 화면이 제공된다. 각 안건번호에 따라 자료들은 심의 신청 자료 내용을 전체 합본으로 pdf파일로 제작되어 시스템에 탑재되고, 안건번호와 제목, 심의 신청부서, 첨부파일, 심의결과 입력, 심의의견 입력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원회 역시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 9]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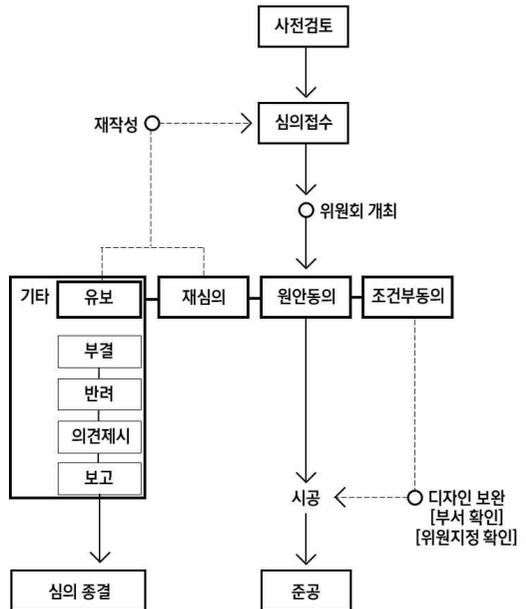
심의 통합관리 시스템 로그인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심의 관리 화면구성					
번호	사명명	신청기간	첨부파일	입력항목	의견사항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접수	심사 신청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유보 <input type="radio"/> 부결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radio"/> 의견제시 <input type="radio"/> 보고	심사결과(의견) 및 심사결과(의견) 등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접수	심사 신청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유보 <input type="radio"/> 부결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radio"/> 의견제시 <input type="radio"/> 보고	심사결과(의견) 및 심사결과(의견) 등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3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접수	심사 신청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유보 <input type="radio"/> 부결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radio"/> 의견제시 <input type="radio"/> 보고	심사결과(의견) 및 심사결과(의견) 등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4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접수	심사 신청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유보 <input type="radio"/> 부결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radio"/> 의견제시 <input type="radio"/> 보고	심사결과(의견) 및 심사결과(의견) 등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5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접수	심사 신청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유보 <input type="radio"/> 부결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radio"/> 의견제시 <input type="radio"/> 보고	심사결과(의견) 및 심사결과(의견) 등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6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접수	심사 신청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유보 <input type="radio"/> 부결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radio"/> 의견제시 <input type="radio"/> 보고	심사결과(의견) 및 심사결과(의견) 등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7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안건 접수	심사 신청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 유보 <input type="radio"/> 부결 <input type="radio"/> 반려 <input type="radio"/> 의견제시 <input type="radio"/> 보고	심사결과(의견) 및 심사결과(의견) 등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심의안건 접수서(부속)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체계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사전검토를 거쳐 심의가 접수되면 안건번호가 부여되고 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기타의 크게 4가지로 심의의 결과를 정한다. 원안동의 및 조건부동의는 동의가 되어 1차례의 심의로 종결된다. 조건부동의의 경우 '부서 확인'과 '위원지정 확인'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디자인 전문가인 행정전문가가 심의 내용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부서확인이다. 위원지정 확인은 지정된 1인의 위원이 조건부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사업수행자를 감독한 후 확인서를 작성, 서명 날인해 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조건부동의가 완료된 것이다.

재심의의 경우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접수하게 된다. 기타는 크게 유보, 부결, 반려, 의견제시, 보고의 다섯 가지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중 다른 지자체와 확연히 구분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심의 의결 유형의 다양성과 특수성이다.

조건부동의나 재심의와 같은 일반적 심의 의결 유형을 제외하고, 가장 자주 활용되는 심의 의결 유형 중 하나는 '기타의 유보'이다. '유보'는 대체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된다. 첫 번째는 재심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업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컨셉 설정부터 오류가 난 경우, 사업예산 조정이나 방대한 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에 대해, 바로 재심을 하지 않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재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디자이너나 설계자들에게 있어서도 합리적 디자인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외에도 반려와 같은 경우는 부결과는 다른 개념으로 위원회 심의가 부적절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의결된다. 의견제시의 경우는, 자문 건이거나 단순 자문으로 심의 종결이 가능한 경우에 채택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의 경우, 공공디자인 정책 등의 수립이나 제도 실행에 따른 위원회 보고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견 개진 없이 보고만을 듣고 종결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그림 1]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체계

3.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주안점 및 발전 방향

3-1.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주요 대상

공공디자인 심의에 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최성호(2017)는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두 법률의 기본적 차이점과, 적용 대상, 특히 심의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디자인법 심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역할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SOC와 공원·광장·수변, 가로공간, 건축물, 공공시설물은 경관위원회가 민간영역을 다루고,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공공영역을 다루는 점에서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특히 경관으로 심의가 불가능한 공공실내공간과 공공용품, 국가와 지역이미지브랜드, 공공서비스 등은 공공디자인의 독특한 심의 대상인 것으로 보였다.

추현수(2011)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당시의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유형 및 대상을 분석하였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분석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양승우(2016)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의 실효성 연구 경기도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와 자문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심의 결정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건축물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계획 수립 시 설치 공간을 고려해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사용자의 이용 편의, 디자인 심미성을 갖출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의 심의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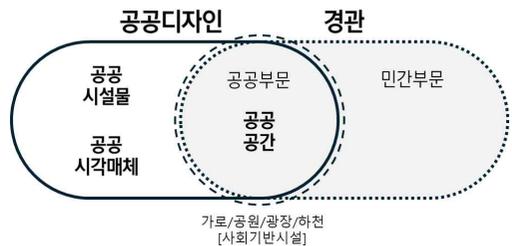
홍성인, 임수영(2018)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에서 지자체 공공디자인 조례의 제정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협의 적용범위 및 대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고찰 및 분석을 토대로 국가가 수립해야 할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 대한 표준안 수립 시 추가되어야 할 부분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는 심의 대상 측면에서 크게 ‘시설물’과 ‘디자인사업’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조례의 심의대상 [별표 1]과 [별표 2]에 나타나 있으며, 표 10 및 표 11의 내용과 같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경관법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와 공공디자인법에서 규정한 공

공디자인심의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대상의 유형분류 기준에 있어서도 이를 동시에 수행하기 편리한 개념 구조로 설정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를 살펴보면, 공공디자인법과 다른 정의가 발견된다. 서울시 조례는 제2조 정의에서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하여 ‘공공공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공간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도 이에 기준하여, 가로의 모든 시설물과 공원(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광장, 하천의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심의 뿐 아니라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 3가지인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중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를 담당하는 경관위원회를 위임받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간과 시설물 간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태생적으로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을 다루는 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에 기인하는데, 디자인서울 1기 때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이름을 서울디자인위원회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경관과 당시 상위법이 없었던 공공디자인의 영역인 세부 시설물까지를 포괄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로 활동한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심의체계는 기본적 구조에 있어, 다음 그림 2와 같이, 경관의 개념 중 민간부문 경관을 제외한 공공부문 경관만을 떼어 내어 공공디자인과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적 개념의 심의를 추구한 것이다.



[그림 2]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 통합적 개념

[표 10]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별표1 - 시설물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분류	시설물의 종류	
사회 기반 시설	도로 시설물 (도로 부속 시설물 포함)	가.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입체교차 라.자전거도로 마.보도포장, 보도.점지블록 바.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방음벽 자.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가로등 카.트렌치, 맨홀 타.제설시설 파.지하보도 및 지하도상가 등 출입구(캐노피 포함) 하.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도시 철도 시설	가.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서울시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지하철안내표지판 다.환기구(흡·배기구) 라.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	가.육갑문, 나들목 나.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 설비	가.삭제
자전거 이용 시설	가.공공자전거, 자전거보관대, 안내시설, 킥보드(전동형 포함) 및 거치대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그 밖의 시설물	전기 통신 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CCTV, 통신안테나 가림시설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정보 통신망	가.삭제 나.삭제
	문화 관광 시설	가.관광안내소 나.관광안내도 다.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 녹지 시설	가.가로수 보호덮개 나.가로 녹지대 다.가로 화분대 라.분수대 마.벽천

분류	시설물의 종류	
그 밖의 시설물	환경 관리 시설	가.휴지통 나.환경미화원 대기소 다.공중화장실 라.삭제
	교통 관련 시설	가.보행자 안내표지 나.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행버스 승차대(정류장, 정류소 포함) 다.삭제 라.교통시설 안내표지판(지하철, 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행버스, 택시, 그 밖의 유사한 것) 마.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전·출입표지 바.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삭제 아.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교통 감시시설 차.볼라드, 보호펜스 카.횡단보도 쉼터
	도로 검용 허가 시설물	가.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시설안내표지·아이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시설물	가.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관용차 등 나.한강유람선, 수상택시, 유선장, 도선장 그 밖의 유사한 것 다.광장 라.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마.전기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정거장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바.가로 영상문화시설, 미디어폴, 정류장·스마트 쉼터 복합 미디어 시설 등 미디어 콘텐츠 시설물 사.친환경 차량 충전시스템 기기 등 그 밖의 유사한 것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각이미지 나. 픽토그램, 서체, 색 등	
미디어콘텐츠	가. 미디어 콘텐츠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2)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표 11]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별표2 - 디자인사업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분 류	세 부 항 목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휴간소음, 인자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송영민(2024)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간 협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우선 수단은 지역위원회의 심의기준⁴⁾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시는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사회기반시설을 동시에 심의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경관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심의를 공공디자인 심의와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경관법에 의한 서울시 경관조례가 제25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9개의 위원회로 분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관법은 경관의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

(사업구역 3만 m²이상), 사회기반시설,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는 이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음 표 12와 같이 9개의 경관위원회로 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 사업대상지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3개의 위원회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은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위원, 즉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이러한 복잡한 경관위원회 구조는 서울의 전체 경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며, 서울시 경관계획이 항상 선언적 지침에 그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상적 관점에서는 도시의 경관을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경관정책 및 관리가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시 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세밀한 심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함도 동시에 보여준다.

[표 12] 서울시 경관위원회의 분화 구조

심의 대상	위원회명	주관부서	심의대상
개발 사업 (사업 구역 3만 m ² 이상)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재개발/재건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 관리과	지구단위계획/민영주택
	도시재개발 위원회	재정비촉진 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 통합심의 위원회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
	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전략산업 기반과	산업단지개발사업
	소규모주택 정비통합 심의위원회	전략주택 공급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사회 기반 시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디자인정책 담당관	도로/하천/도시철도/기타시설
건축물	건축위원회	건축기획과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다중이용건축물(16층, 5천 m ² 이상)
	도시공원 위원회	공원조성과	도시공원 내 건축물

서울시 경관조례는 사회기반시설 심의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기반

4) 송영민, 공공디자인 정책의 정합성 이해-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9, No.8, 2024, p.718

시설 중 표 13과 같이 7가지의 대상은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반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도로와 하천, 자전거 이용 시설의 3가지는 보행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 실제 보행환경과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공공 시설물 중 가로시설물들이 모두 연계 심의를 받게 되는 구조가 된다. 또한 야간경관 시설과 생활체육시설도 가로공간과 하천 등과 연계되어 있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되고 심의의 대상이 된다.

[표 13] 경관조례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위임한 심의

사회기반 시설명	경관심의 대상	금액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도시 철도시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생활체육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자전거 이용 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야간경관 시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발전·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결과적으로 경관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회기반시설과 공공디자인진흥 조례가 정하고 있는 시설물 심의 대상을 묶은 것이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 대상인 것이다. 독립적인 사회기반시설 외에도 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지구조성사업 등과 맞물려 있어, 반드시 민간부문 이외 공공부문의 보도를 포함하는 도로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 측면에서 도시 개발사업들의 건축물 이외 공개공지, 공공부문은 전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심의는 공공부문의 경관과 시설물을 모두 다루는 매우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심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3-2.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주요 논점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다루어지는 실제적 논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25년 1년간 수행된 19회의 심의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표 14와 같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심의 안건 번호와 제목들, 심의 내용을 토대로 심의 목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공공디자인과 사회기반시설 경관 중 어떠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심의의 주요 논점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심의 총 143건 중 공공디자인 대상을 다룬 심의는 136건으로 93.8%였고,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대상은 72건으로 50.3%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공공디자인과 경관이 동시에 복합된 심의 대상은 57건으로 전체의 23.5%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는 대체로 공공디자인 대상인 시설물이나 시각매체가 포함된 사업들이 확인된다. 또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업들이 경관의 사회기반시설과 관련성이 있는 점에서, 서울시 자치구를 제외한 본청의 사업들은 도시개발 사업들의 비율이 높으며 총 공사비의 규모도 100억 이상인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도로를 포함한 사업에서는 보도와 공개공지, 공공통로와 기부채납 공간들이 함께 포함되며, 가로공간을 다루는 관계로 펜스, 블라드, 가로등, 수목보호대, 벤치 등 다양한 가로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심의 안건 중 1/4정도의 안건들은 사회기반시설과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이 한꺼번에 묶여서 심의가 되는 형식으로, 대부분 가로공간이나 터널 등의 대규모 선형 공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의 주요 논점에서 1순위는 공공가로와 그에 수반되는 가로시설물이다. 특히 공공가로의 유효보도폭 확보 문제 및 점자블록 설치의 유형 확정, 보도블록의 적정 크기 문제가 가장 많은 심의 논점으로 논의된다. 또한 골목길 진입로 및 주차장 진입로로 인한 보도 단절을 막기 위해 해당 부분을 고원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원칙 역시 주요한 심의의 논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공간에 대응할 때 블라드와 펜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도시 개방성 확보라는 명제가 중요하게 작동한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중요한 접근은 전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기능적 보행성' 확보와 '경관적 개방성' 구현이라는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표 14]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2025년 심의 목록 분석

2025 심의 번호	심의제목	공공 디자인	사회기반 시설경관	심의 주요 논점
1-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	○		가이드라인
1-2	서울서체 2.0(서울 알림체) 개발 및 확산 사업	○		서체
1-3	2024년 읽기 쉬운 디자인도시 조성	○		지하철 안내정보
1-4	무교다동 제3지구 도시경비형 재개발사업	○	○	공공가로, 공개공지
1-5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사업	○	○	공공가로, 시설물
1-6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	○	○	시설물, 보도
1-7	교통통제 안내시설물 디자인(재심)	○		안내시설물
1-8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재심)	○	○	토목구조, 교통시설물
1-9	성수동 아틀리에길 도로환경개선 사업(재심)	○		바닥 색채, 패턴
1-10	올림픽대교 남단 줄음쉼터 설치 사업(재심)	○		쉼터구조물
2-1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지하연결보도 및 출입구 기본설계용역	○	○	지하보도, 출입캐노피, 엘리베이터
2-2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	옹벽, 보행로
2-3	노들 글로벌 예술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		선착장
2-4	신반포18차 337동 주택재건축사업	○	○	공공가로, 방음벽, 가로 시설물
2-5	2호선 성수역 환잡도 개선	○		출입캐노피
2-6	천호대교 남.북단 승강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엘리베이터
2-7	장위4구역 도로정비공사	○	○	공공가로, 방음벽, 가로 시설물
2-8	경의선 숭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	○	토목구조, 펜스
2-9	광진형 편 디자인 버스승차대(재심)	○		버스쉼터
2-10	일원동 맛의거리 삼성서울병원 보도육교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재심)	○	○	토목구조, 엘리베이터

2025 심의 번호	심의제목	공공 디자인	사회기반 시설경관	심의 주요 논점
3-1	고덕천 수변 경관 거점 조성사업	○	○	보행로, 안내사인
3-2	신동섬나들목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나들목 임면, 통로내부
3-3	한천로,도봉로15길 노후보도 정비공사	○		보도패턴, 펜스
3-4	동대문구 5층 거리 조성 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3-5	동대문구 청량마켓 문화광장 조성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3-6	광진구 양꼬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	○	보행자우선 바닥패턴
4-1	암사동 주요시설 안내지도 및 방향사인 설치	○		안내사인
4-2	양평12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4-3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사업	○		입면차폐막
4-4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4-5	휘경로 5층거리 조성 사업	○	○	광장, 쉼터
4-6	청량마켓 문화광장 조성사업(재심)	○	○	블라드, 휴게 시설
4-7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재심)		○	옹벽, 펜스
5-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 통합 추진계획	○		정책
5-2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제품 공모	○		펜스
5-3	종로 주얼리거리 홍보시설물 설치 사업	○		조형물
5-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쉼터 조성	○		스마트쉼터
5-5	반포대교남단 진출입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진출입 연결통로, 벽면 디자인
5-6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경비사업 내 도시계획도로 주변 보.차도 및 가로시설물 계획	○	○	공공가로, 방음벽, 가로 시설물
5-7	대치동 구마음제3지구 주택재건축경비사업조합	○	○	공공가로, 방음벽, 가로 시설물
5-8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경비사업	○	○	공공가로, 방음벽, 가로 시설물
5-9	중화1재정비축진구역 주택재개발경비사업	○	○	공공가로, 방음벽, 가로 시설물
5-10	경원선 신이문역 시설개선사업	○	○	출입캐노피

2025 심의 번호	심의제목	공공 디자인	사회기반 시설경관	심의 주요 논점
6-1	2025년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 기 개선사업	○		정류장 안내 디지털 표식
6-2	지능형 수상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		CCTV플
6-3	종각역 북측 지하 연결도로(지하연결 통로) 조성사업	○		지하철 연결통로
6-4	방배5구역 주택재 건축 정비사업 내 도시계획도로	○	○	공공가로, 방음벽, 가로 시설물
6-5	청량리 민자 역사 지하연결도로 설치 공사	○		지하철 연결통로
7-1	폭염·한파 저감시 설 확대	○		스마트 씬터
7-2	석촌호수로 정원조 성사업 기본 및 실 시설계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7-3	마포로1구역 제48 지구 도시경비형 재개발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7-4	서울약령시 아치형 간판 제작·설치	○		조형물
7-5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	○	토목구조물
7-6	펀(Fun) 디자인 시 설물 개발	○		가로시설물
7-7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서울로 7017 연결보행교	○	○	교량, 계단, 엘리베이터
7-8	지능형 수상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재심)	○		CCTV플
8-1	목일중·신목고일대 방음벽 정비사업	○		방음벽
8-2	서대문구 도로안전 시설 정비사업	○		펜스
8-3	광평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엘리베이터
8-4	명동 경관개선사업	○	○	보도패턴, 캐 노피, 시설물
8-5	도림천 일대 대심 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	○	옹벽, 안내사 인, 놀이터
9-1	서초 책있는 거리 디자인개발 및 시 설물 제작·설치	○		진입동선
9-2	성내동 활력가로 조성 사업	○		안내사인
9-3	용산구 한강로3가 아세아아파트 특별 계획구역 도시계획 시설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9-4	도봉공영차고지 방 음벽 개량사업	○		방음벽
9-5	연희맛로 일대 보 행환경개선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2025 심의 번호	심의제목	공공 디자인	사회기반 시설경관	심의 주요 논점
9-6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공사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9-7	종로 주얼리거리 홍보시설물 설치 사업	○		조형물
9-8	미아, 찾고 싶은 으뜸거리 조성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9-9	위례선(트램) 도시 철도 건설공사	○		트램정류장
9-10	도산대로 및 강남 대로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0-1	남대문시장 감성가 로 조성사업	○		브랜딩, 바닥 패턴, 사인
10-2	고산자로 가림막 환경개선사업	○		그래픽
10-3	잠실진주아파트 주 택재건축정비사업	○	○	공공가로, 방음벽, 자전 거도로 펜스
10-4	서울시 동작구 상 도동 23-42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설 공사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0-5	도곡삼호아파트 주 택재건축정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0-6	석촌호수로 정원조 성사업 기본및실시 설계(재심)	○	○	공공가로, 식재수종과 산책로
10-7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공사(재심)	○	○	공공가로
11-1	반포아파트(제3주 구) 주택재건축정 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1-2	중랑천 둔치 진출 입시설 설치공사	○		제외치 입면, 내부조명
11-3	답십리 굴다리 지 하보차도 입면부 디자인	○		지하보차도 입면
11-4	서울시 동작구 상 도동 23-42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설 공사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2-1	천호3 도시환경정 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2-2	청계천오간수교 상 부 미디어플 설치	○		플 형상
12-3	(심의취소)			
12-4	잠수교 접근성 개 선사업 기본 및 실 시설계	○	○	토목구조, 펜스, 조명
12-5	서대문구 도로안전 시설 정비사업	○	○	토목구조
12-6	고산자로 가림막 환경개선사업(재심)	○		그래픽
12-7	표준디자인(지상 노출 엘리베이터) 캐노피 검토방안	○		엘리베이터

2025 심의 번호	심의제목	공공 디자인	사회기반 시설경관	심의 주요 논점
13-1	도봉 제2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3-2	서초 성뒤마을 공 공주택지구 남부순 환로 생태이동통로 및 방음벽 설치사 업	○		생태이동통로 심의 적합성
13-3	구 서울여성 앞 보 도육교 개축 및 승 강기 설치	○		육교위치, 엘리베이터
13-4	31회 서울우수공 공디자인 인증제	○		인증 확정
13-5	서울 출렁다리 조 성(중랑천) 기본설 계	○	○	설치위치, 교량형식
13-6	도림천 일대 대심 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	○	옹벽처리, 휴게공간
13-7	잠실진주아파트 주 택재건축정비사업	○	○	공공가로, 방음벽, 자전 거도로 펜스
14-1	남산 예방공원 접 근성 개선사업	○		사선미디어, 진입동선
14-2	KAIST 서울캠퍼스 일대 지식의 거리 환경개선 사업	○	○	한글 컨셉, 휴게시설 위치
14-3	암사초록길 일대 미관정비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	○		시설물
14-4	홍제초등학교 방음 벽 설치공사	○		방음벽 규모
14-5	교통수단 통합밴드 개발 및 확산	○		그래픽
14-6	구 서울여성 앞 보 도육교 개축 및 승 강기 설치(재심)	○		육교 형상, 엘리베이터
14-7	왕산로 야간명소 조성사업(재심)	○		광장 조형물
15-1	어린이 통학로 디 자인 개선사업	○		그래픽 위치, 수량
15-2	성북구 스마트 씬 터 설치	○		스마트쉘터
15-3	천호동로데오거리 청년거점 조성	○		안내사인
15-4	가재울8 재정부축 진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5-5	방배6구역 주택재 건축정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5-6	광화문 일대 대심 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	토목구조
15-7	부천대장 광역도로 건설공사	○	○	가로시설물
15-8	도봉 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2025 심의 번호	심의제목	공공 디자인	사회기반 시설경관	심의 주요 논점
16-1	선정릉 봉은사 역 사문화거리 조성사 업	○	○	바닥그래픽, 시설물
16-2	압 구 정 로 K-Culture Street 조성사업	○	○	공공가로, 포토존
16-3	노원구 덕릉로 걷 고 싶은 품격보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6-4	행당제7구역재개발 정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6-5	KAIST 서울캠퍼스 일대 지식의 거리 환경개선 사업(재 심)	○	○	휴게공간, 휴게시설물
16-6	남산 예방공원 접 근성 개선사업(재 심)	○		미디어형식
17-1	이문3구역재정부축 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7-2	와우산 녹지연결로 (엘리베이터) 개선 공사	○		엘리베이터, 계단
17-3	서울형 음수대 디 자인 개발	○		제품 규격
17-4	반포 수상 푸드존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내부동선, 한강버스 연계 동선
17-5	고양지축 공공주택 지구 외 도로(차노 선) 건설공사	○	○	보도패턴, 가로시설물
17-6	방배6구역 주택재 건축정비사업	○	○	공공가로, 가로시설물
17-7	중랑구 면동초 어 린이 통학로 디자 인 개선사업	○		그래픽
18-1	홍제천 노후 보강 토 옹벽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옹벽, 휴게 시설
18-2	2025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		거리가게, 이동설치
18-3	2025 교통시설 유 니버설디자인 가이 드라인 개발	○		정책
18-4	공공체육시설 조성 한서공영주차장 리 모델링		○	주차장 입면
18-5	성북 스마트쉘터 구매 설치(재심)	○		스마트쉘터
18-6	동부간선도로 지하 화 민간투자사업 (변경/재심)	○	○	터널램프부 조명
18-7	서울 출렁다리 조 성(중랑천) 기본설 계(재심)		○	교량 필요성

2025 심의 번호	심의제목	공공 디자인	사회기반 시설경관	심의 주요 논점
19-1	압구정나들목 리모델링	○		제외지 입면
19-2	성덕정 외 6개소 나들목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제외지 입면, 내부 조명
19-3	모두의 지하철을 위한 안내표지 디자인 개선사업	○		약자 안내 표지 신설
19-4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방음벽 설치사업	○		방음벽
19-5	걷고싶은거리(영동대로)조성사업	○	○	띠녹지 곡선형상
19-6	엑티브디자인 개발	○		광장 배치, 바닥 색채
19-7	선정릉-봉은사역 사문화거리 조성사업(재심)	○	○	휴게시설
19-8	와우산 녹지연결로(엘리베이터) 개선공사(재심)	○		엘리베이터
19-9	반포 수상 푸드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재심)	○		선착장
19-10	이촌한강공원 내(주)씨클원네스서울 부유식 수상구조물 대체건조	○		선착장
19-1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2공구 건설공사(건축시스템)	○	○	광장 시설물, 태양광 패널
19-12	횡단보도 그늘막 디자인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계	총 안건 143건	공공 대상	경관 대상	공공+경관 대상
		136건	72건	57건

심의 대상 중 가장 많은 대상은 가로공간 및 이와 연관된 가로시설물이며,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지는 대상은 시설물 중 방음벽,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베이터이다. 방음벽에 대한 심의의 논점은 대개 높이에 대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가가 여부이지만, 위원회의 방침이 정규 지침화되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환경부의 방음벽 적용 대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규모보다 서울시가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 공동주택 면적 규모를 더 작게 잡고 있어, 도시 환경에서 불가피한 방음벽의 높이가 과도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의는 최대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중이지만,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엘리베이터는 2024년까지 주요 심의 대상이었으나 2024년 서울시 엘리베이터 표준형 디자인이 만들어지면서, 비교적 논점이 없이 정리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특징적 부분 중의 하나는 한강으로 인해 제외지 통로(한강연결통로) 및 한강에서 운행 중인 선박과 각종 선착장 및 수상버스, 유람선 등의 도선장, 유선장과 같은 수상관련 시설이 모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에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이러한 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닌 부유시설 위에 부가되는 시설로 선박에 준하여 심의를 받는다. 즉, 서울시의 공공 운송수단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시설들이 다중문화시설 또는 교통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건축법에 준하여 비상대피로의 설치, 방화구역의 구분, 2,3층 및 옥상층까지 엘리베이터 연결 의무화, 생태지역에 기초한 야간 조명 조도 등이 심의에서 논점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각종 펜스, 핸드레일, 휴게시설 등 보조 시설물과 편의시설물들이 심의된다.

3-3.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발전 방향

앞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심의는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사회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공간 중 가로공간과 이에 연계된 가로시설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의의 논점들은 대개 운영 원칙에 대한 지침 제공 등의 부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발전방향을 네 가지 정도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의 마련과 공시가 필요하다. 특히 심의 시 제출해야 할 도서의 필요기준에 대해 먼저 상세한 연구를 수행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심의는 공공디자인과 사회기반시설의 심의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자료가 요구된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안내사인, 공사장가림막과 같은 그래픽 사안과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엘리베이터, 보행육교 같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심의 도서 구성 체계와 내용이 다를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경관법은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을 경관법 시행령 하위 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57호'로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경관 심의)를 수행할 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⁵⁾ 표 15는 경관심의 운영 지침이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따라 경관심의 도서 작성 방법이 각각 다르게 구성되고 있는 경관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디자인법도 이러한 심의 운영 지침에 대하여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표 15] 경관법의 경관심의 운영 지침 구성

항목	세부항목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적용범위
제2장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제1절 경관심의 대상 제2절 경관심의 시기 제3절 경관심의 기준 제4절 경관심의 도서 작성 방법
제3장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제1절 경관심의 대상 제2절 경관심의 시기 및 주체 제3절 경관심의 기준 제4절 경관심의 도서 작성 방법
제4장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1절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제2절 경관심의 기준 제3절 경관심의 도서 작성 방법 제4절 건축법 기준의 완화적용 계획서 작성방법
제5장 경관심의 절차	제1절 사전검토절차(임의) 제2절 경관심의 절차
제6장 경관위원회의 심의	제1절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제2절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제3절 그 밖의 사항
제7장 행정사항	

건축법은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하위 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910호’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필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⁶⁾ 다음의 표 16은 건축법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제출서류와 관련한 행정규칙에서

5)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제2절 적용범위,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law.go.kr/행정규칙/경관심의운영지침
6)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law.go.kr/LSW/admRulLinkProc.do?admRulNm=건축위원회심의기준&mode=20&chrClsCd=

제시된 도서 제출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건축의 경우, ‘건축계획서’와 ‘설계도서’라는 두 가지의 도서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심의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16] 건축법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제출서류 별표1 기준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계획서	건축 계획서	1.사업 개요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건축물 개요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3.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 현황, 시설물현황 등 4.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 5.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 등)계획	5는 심의 필요시 제출
2. 설계도서			
분야	도서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고
건축	배치도	1.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적합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대지의 총횡단면도 3.건축선 및 대기경계선까지의 이격 거리 4.주차장 배치 계획 5.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평면도	1.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복도 및 계단 위치 5.승강기 위치 등	
	입면도	1.2면 이상 입면계획 2.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단면도	1.종 횡단면도 2.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조경 계획도	1.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공공디자인 심의도 장기적으로는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심의 운영 지침이 구성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심의에서 주요한 논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인 가로공간, 도

시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의 4가지 영역 정도에 대해서 심의 도서 작성 방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심의 중 가장 논점이 많은 공공가로에 대해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기준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7과 같은 대상별 심의 세부 기준들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심의체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심의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심의는 2024년 이전 유니버설디자인팀 및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팀 등에서 가로공간 및 대형 건축물 관련하여 사전검토를 행정 프로세스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조례에 의한 지침이 아니다 보니, 상황에 따른 변화로 현재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2인이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형태로 변화해왔다.

현재 사전검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전검토의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 없는 안건 상정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재심의가 증가하여 행정 손실과 위원회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기반시설 심의의 경우 도서량이 최소 수십 페이지에서 1~2 백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사전검토에 대한 처리 없는 안건 상정은 재심의가 불가결한 요건을 만든다.

따라서 사전검토 개선이 없는 경우 위원회 상정이 불가하도록 행정적으로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관련 행정규칙 등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심의 결과에 대해, 공사 후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제출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행정적 제약 사항이 없는 내부 검토에 불과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때 가장 현실적인 접근방법은 시공단계 후 최종 준공 전, 심의 부서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준공보고서 제출 시 최대한 간단하게 심의도면과 현장사진을 비교 형태로 제출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주어지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준공보고서 제출 의무화 역시 조례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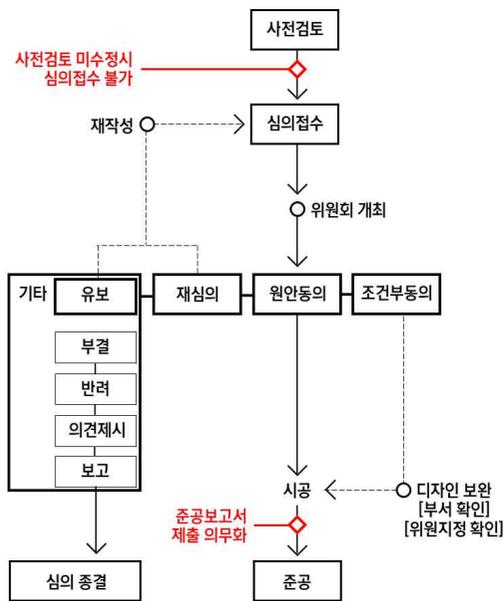
다음의 그림 3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체계에 사전검토 미수정시 심의접수가 불가함을 표기하고, 시공 후 준공단계 이전 준공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때 심의체계가 작동하게 될 체계의 개선방향을 예시로 제안한 것이다.

[표 17] 서울시의 공공가로 심의 세부 기준 제안(예시)

범위	주요 대상	대상별 심의 세부 기준
공공 가로	교통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자료 제출 필수 (고원식 횡단보도 위치 표시 및 교통안내표지판 위치 자료 필수)
		유도도폭 최소 2M 확보
	보도	블록 300X300 최소기준
		바닥 미끄럼 방지계수 40bpn 이상 확보 필수
		포천석보다 어두운 고형색 색채 이상의 증명도 사용 원칙
		투수성보다 평탄성 우선
		흙뿌리기 패턴은 10% 권장
		차량진출입부 및 블록 단절부는 고원식으로 처리, 보행 연결성 우선(연결 생활도로 30km이하 의무 적용)
		슬로프 1/18 적용 (법적요건 1/12보다 상향)
	점자블록	공개공지 중 보도형 공개공지의 공공보도 통합 처리시 연석 미사용 필수(엣지 블레이드, 금속 징 등에 의한 측량선만 구성 필수)
		보도폭 3M 이내 점자블록 시종점부만 처리
		보도폭 3M 이상 점자블록 전체 처리
	사전거 도로	디자인을 위해 300mm 보행유도선이 측부에 설치된 경우 점자블록 시종점부만 설치 가능
		표층색 포장 필수
	펜스	원형구간은 국토부 고시 기준 적용(20m 압적색)
		자전거도로 전 구간 펜스 불필요 원칙, 안전사고 예방구간만 설치
		도시의 개방성을 위해, 기립적 미설치 원칙
	가로등	횡단방지 목적인 경우, 도로의 한 쪽만 설치, 중앙차로 횡단방지봉 설치시 미설치 권장
		공공디자인 인증제보다 품질 우수 제품은 사용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의 노란색 표시는 차량속도에 맞추어 3경간 당 1개소만 설치
수목보호대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에 의한 M1~M4등급 지역 확인 필수	
	가로등 조도 및 휘도 시뮬레이션 제출 필수	
방음벽	사거리 가로등과 신호등주 통합지주 처리 필수	
	금속형 수목보호대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사용 필수, 보행유도폭 확보 우선	
		서울시 전체 6m이하만 설치 (강변도로, 아파트 등 모든 구간)
		병원, 학교만 초과 특별사유 심의
		최상부 3m 세로 강화유리 적용

셋째, 심의 안건을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나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심의 준비 서류의 종류와 작성 방법, 심의 단계 등을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공식적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안내 운동이 필요하다. 현재도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간단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여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세부기준 교육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선박 관련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다 보니, 개별사안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전반적인 통합 측면에서의 검토가 위원장 및 가로공간을 심의할 수 있는 일부 위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심의 세부기준 수렵과 함께 위원회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위원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 현재 2~3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약식 워크숍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매년 정기적 형태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체계 개선방향 제안

4.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심의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 분석하였다.

연구는 크게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 심의체계를 탐구한 후,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주요대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2025년 1년간 심의목록의 특성을 분석해 심의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네 가지의 제안 사항을 도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공공디자인법에서 정한 지역위원회의 개념과 심의-조정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법제 구성과 심의범위를 조사하였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범위는 조례상 정책 및 제도, 사업추진 및 지원,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물 및 사업, 경관조례의 사회기반시설, 기타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다. 또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 구성 및 자격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심의의 개요와 심의 운영 프로세스, 심의 신청 자료의 구성, 독립적인 심의 관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시 크게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기타(유보, 부결, 반려, 의견제시, 보고)의 4가지 의결 형태를 정리하고, 현행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체계를 도식으로 분석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틀을 수립하였다.

3장에서는 먼저 공공디자인 심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 특성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공공디자인과 공공부문의 경관을 연계 심의하고 있는 '통합적 심의'를 주요한 특성으로 분석해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상의 심의대상 별표가 제시하고 있는 상세한 목록을 분석하고, 서울시 경관조례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위임한 심의대상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 결과 이러한 융합적 특수성은 서울시의 경관위원회가 9개나 되는 독특한 분화구조로부터 비롯됨을 분석해 내었다.

또한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주요 논점을 다루기 위해 2025년 1년간 수행된 19회의 심의 목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간 공공디자인법에 의한 심의는 총 143건의 심의 중 136건으로 93.8%였고, 경관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심의는 72건으로 50.3%의 비율을

보였다. 또한 공공디자인과 경관이 복합된 심의 대상은 57건으로 23.5%의 비율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심의 안건 중 가장 많은 대상은 가로공간 및 이와 연관된 가로시설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지는 대상은 시설물 중 방음벽,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베이터였다. 아울러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특징적 부분 중의 하나는 한강과 관련해 제외지 관련 공간과 선박 및 선착장 등의 심의도 다수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서울시 심의의 공공디자인과 사회기반시설 경관이 결합하는 특수성 및 심의의 목록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의 발전 방향으로 다음의 네 가지 방향을 추출하였다.

첫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의 마련과 심의 도서 구성 체계 및 제출 자료의 공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관법과 건축법의 심의 도서 제출 관련 제도의 사례를 비교하여, 서울시 공공가로를 대상으로 한 심의 세부 기준들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둘째, 심의체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심의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검토 개선이 없는 경우 위원회 상정이 불가하도록 행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과 시공단계 후 최종 준공 전, 심의 부서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심의체계 개선방향을 도식으로 제안하였다.

셋째, 심의 안건을 준비하는 단계를 위한 상세 안내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안내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의 간단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넘어 독자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넷째, 심의위원에 대한 심의 세부기준 교육이 필요하다. 위원회 운영시 원활한 검토와 결정을 위해 위원회 정기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가 가진 특성과 운영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립함으로써, 본 연구는 향후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 운영 개선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행정가 및 연구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심경미, 이세진, 유예슬,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일반연구보고서 2023-11, 건축공간연구원, 2023
2. 김영, 이현성, 김주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심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0
3. 송영민, 공공디자인 정책의 정합성 이해-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4
4. 최성호,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7
5. 홍성인, 임수영,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심의 및 자문 대상 구분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8
6. 양승우,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의 실효성 연구-경기도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16
7.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0호, 2023.12.29.)
8. 경관심의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7호, 2020.9.21.)
9. 공공디자인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10.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818호, 2025.9.29.)